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1314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833,091원과 그 중 9,952,264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망 D 사이에 2019.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양수금 합계액인 22,833,091원과 그 중 원금인 9,952,264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망 D 사이에 2019.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인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B 및 E, F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손자인 자신에게 증여된 것으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채무자인 피고 B의 아들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B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B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이고, 피고 C은 위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악의의 '전독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의 G 주식회사는 위 B에게 2014. 11. 19. 금 1,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9. 11. 19.,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소의 H는 2017. 8. 16. 위 G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1, 2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원고는 2018. 10. 26. 위 H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위 B은 위 양수금과 관련하여 금 22,833,091원 및 그 중 금 9,952,264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소의 주식회사 I []은 위 B []에게 2014. 11. 24. 금 500만 원을 대출받기일 2018. 11. 2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각 연 34.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대출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B []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7. 28. 위 I []의 B []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B []을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8가소306226), 2018. 5. 16.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위 B []은 위 양수금과 관련하여 금 8,312,834원 및 그 중 금 3,646,660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7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3) 소결

전술하였듯이 원고는 위 (2) 항의 채권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았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B []을 상대로 위 (1)항의 채권에 대해서만 양수금 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2)항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 (31,145,925원)입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B의 아버지는 소의 J이었는데, 위 J은 2019. 2. 17. 사망하였고, 위 B은 위 J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J의 상속인들 및 B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축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 D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19. 5. 27. 피고 D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8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후 위 D은 2019. 9. 25. 위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해 10. 17.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8호증의 1, 2 각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B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B의 재산인데, B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 바, 위 분할협의를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D과 전득자인 피고 C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위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B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전인 2012. 4. 5.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주식회사 K’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19. 11. 4. 말소되었습니다(갑 제 8호증의 1, 2 각 참조).

따라서 본건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인 바, 원고는 2020. 5. 27.까지의 원리금 채권액인 금 31,145,925원을 한도로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J은 2019. 2. 17.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수익자)와 자식들인 E, B(채무자), F이 있었습니다(갑 제9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10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11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수익자 D와 채무자 B는 모자관계이고, B의 상속지분은 2/9입니다.

나. 위 J은 2019. 2. 17.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19. 5. 10.입니다(갑 제11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19. 5.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9 지분은 채무자인 B에게 상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을 D만이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2. D의 사망

본 사건의 수익자인 D은 원고가 제소하기 이전인 2019. 10. 2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식들인 E, B, F이 있습니다(갑 제12호증의 1, 2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따라서 원고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후술하듯이 원고는 '전득자'인 피고 C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청구를 하는 바,

'수익자'에 대한 청구는 향후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¹⁾.

3. 채무자 피고 B의 무자력

가. L의 2020. 10. 15.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 B은 위 사해행위 당시(2019. 5. 10.)

- ① 한국자산관공사에 금 2,680,000원(2016. 10. 17. 연체 발생), 10,056,000원(2016. 10. 4. 연체 발생)
- ② M에 금 7,517,000원(2016. 7. 26. 연체 발생),
- ③ 신용보증기금에 금 216,904,000원(2016. 3. 4. 연체 발생),
- ④ 동대문세무서에 금 100,000,000원(2016. 5. 17. 공공정보 등재),
- ⑤ 서초세무서에 금 50,000,000원(2016. 1. 9. 공공정보 등재),
- ⑥ 북대구세무서에 금 50,000,000원(2017. 4. 22. 공공정보 등재),
- ⑦ 고용노동부에 금 30,623,000원(2018. 6. 28. 공공정보 등재),
- ⑧ N에 금 24,574,000원(2014. 8. 14. 채무보증 발생)

1) 원고는 애초에 수익자 D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가 후술하듯이 전득자 C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변경을 하였는 바, 엄밀히 수익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상 형식적으로는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친 후에 취하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⑨ ○ 공제조합에 금 72,447,000원(2016. 7. 6. 채무보증 발생),
 [위 회답서 중 '신용정보 조회 결과' 1쪽 참조]
 [사해행위 이전 연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미변제된 채무들임]

⑩ 원고에 금 13,598,924원(9,952,264원, 3,646,660원, 원금 기준, 원고가 양
 수한 채권),

등 합계 578,399,92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위 채무는 이자는
 제외한 '원금'만에 대한 것인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더 클
 것입니다).

나. 법원행정처의 2020. 10. 8.자 회신에 의하면, 피고 B 은 2018. 1. 1.부
 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19. 5. 10.)를 거쳐 조회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P 전 1421㎡' 소유하였고, 현재도
 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갑 13-1 동기사함전부증명서 참조).

위 사해행위 당시(2019. 5. 10.)의 위 부동산의 가액은 9,918,580원입니다
 [1421㎡ × 6,980원(갑 13-2 개별공시지가)].

다. 위와 같이 적극재산(9,918,580원) 보다 소극재산(578,399,924원)이 더 많은
 상태에서 피고 B 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그로 인해 B 은 그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
 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애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K []은행)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주)Q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2020. 9. 23.자 회신에 의하면, 피담보채무는 이미 2015. 4. 13. 변제되어 완제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위 근저당권은 2015. 4. 13. 피담보채무액이 변제되었음에도 말소가 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2019. 11. 4.에서야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사해행위(2019. 5. 10.)를 전후하여 책임재산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닌 바, 원고는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

2) 주식회사 Q []은 주식회사 K []의 변경 후 상호입니다(참고자료로 제출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참조).

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원고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전득자인 피고 C이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다. 애초 원고는 본 사안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이 ‘가액반환’으로 보아 수익자 D 및 전득자 C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전술하였듯이 본건은 원상회복의 방법이 ‘원물반환’인 경우이므로, 원고는 전득자 C가 채무자 B에게 원물반환을 하라는 청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5. 선의의 입증책임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대법원 2006.07.04. 선고 2004다61280 판결),

피고 C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밝혀야 합니다.

피고 C은 채무자 피고 B의 아들인 바(갑 제1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채무자는 상속을 받지 않고 그 아들이 대신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목록

1. 대구광역시 서구 대 82.6㎡
2. 대구광역시 서구
 - 1층 목조와집 주택 29.57㎡
 - 1층 목조와집 주택 5.13㎡ 끝.

